

의안 번호	823	【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】 검 토 보 고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1. 6 . 29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6. 30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7. 8(금)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
- 201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예 산 액 : 3,805,628천원 (일반회계 3,238,652천원, 특별회계 566,976천원)
- 지출결정액 : 20,000천원 (일반회계 20,000천원)
- 지 출 액 : 20,000천원 (일반회계 20,000천원)
- 불 용 액 : 0천원 (일반회계 0천원)
- 지출내역

구 분	적 요	지출액(천원)
일반회계	강설 대비 제설자재(염화칼슘) 구입	20,000
특별회계	지출액 없음	0

4. 관련법령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9조 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【지방재정법】

제43조 (예비비)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
5. 검토의견 : 없음.